



#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

## 1. 지원대상

-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(KOTRA 선정)
- 수출 비중 50% 이상 (국세청 자체선정)

## 2. 세정지원 내용

### ① 자금유동성 지원

- 납부기한 연장(최대 9개월)
- 납세담보 면제(1억원 한도)
- 압류·매각 유예(1년 범위내)
- 경정청구 우선 처리(2개월→1개월)
- 영세율 등 환급금 조기 지급

### ② 경영 지원

- R&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
- 신고내용확인 제외 (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)
-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

### ③ 맞춤형 세무상담

- 수출 중소기업 홈택스 **전용상담시스템** 제공

## 2-1. 자금유동성 지원

항목	세부 지원 내용
▶ 납부기한 연장	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<b>최대 9개월 범위내 승인</b>
▶ 납세담보 면제	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<b>최대 1억원 한도</b> 로 납세담보 면제
▶ 압류·매각 유예	체납된 기업이 압류·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<b>최대 1년 범위내 승인</b>
▶ 경정청구 우선 처리	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<b>처리기한 단축</b> (기존 2개월→1개월)
▶ 환급금 조기 지급	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미리 지급지원대상에 추가하여 <b>최대한 앞당겨 지급</b>

## 2-2. 경영 지원

###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

R&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? R&D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·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**미리 심사**하여 줄 것을 **요청**할 수 있는 제도(각 지방청 법인세과에서 심사)

- **신청인** 내국법인, 거주자
- **신청대상** 연구·인력개발 관련 **비용**(지출예정인 비용, 일부비용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)
- **신청기한** 법인세(소득세) 과세표준 **신고 전**(단,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, 수정신고, 기한 수 신고 전에 신청 가능)
- **제출서류** 사전심사 신청서, **연구개발비 명세서, 연구개발보고서** 등(관련 서류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)
- **심사결과** 서면으로 결과통지,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 가능
- **효력부여**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,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제외

### 세무검증부담 축소

신고내용 확인이란? 수입금액 신고 누락, 비용 과대 계상, 감면 오류 적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전에 미리 안내 하였음에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게 **수정신고를 안내**

**“법인세,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”** ✓

※ 다만,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



#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

## 3.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

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는 본청, 지방청, 세무서 법인세과에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국세청(본청) 044-204-3319
- 중부지방국세청 031-888-4835
- 이천세무서 법인세과 031-644-0403

## 4.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

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기업의 애로·건의사항을 수집하고 있습니다.

아래 이메일과 팩스로 소중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메일 : [mjk0419@nts.go.kr](mailto:mjk0419@nts.go.kr)  
 팩 스 : 0503-112-5457  
 전 화 : 031-644-0213

## 2-2. 경영 지원

###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

뉴스레터 형식으로터 분기마다 이메일 발송



**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안내**

■ 세액감면 내용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저·중·소기업으로서, 제조업, 도·소매업 등 27개업, 임업 등 경제활력증진에 관한 사항(제조업, 임업)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율 5~30%를 감면 (중·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)

기업 규모	사업장 소재지	감면율	감면률
중기업	수도권내	제조업 등	20%
	수도권외	제조업, 임업	10%
중·소기업	수도권내	제조업 등	20%
	수도권외	제조업 등	10%
중·소기업 (8기업 30)	수도권내	제조업 등	15%
	수도권외	제조업, 임업	5%

**연구·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**

- 각 사업연도에 연구원칙제당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금액 부여
- (연구·인력개발비)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 등 5년 분할할 수 있음. 비후유도지(인력개발비) 연구개발비, 인력개발비로 구분
- (성장·협력기반 연구개발비) 지역특화분야, 기술개발, 연구개발, 인력개발, 인력개발, 인력개발(2개 분야, 240억 이상) 연구개발비, 인력개발비
- (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)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0조의 비후유도지(인력개발비) 연구개발비로 제외됨
- (주세율) 기업유형별, 연구·인력개발비 중량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

구분	선생원 R&D	일반 R&D	
		중·소기업	대기업
중·소기업	30~40%	20%	50%
중·대기업	20~30%	8~15%	40%
일반기업		0~2%	25%

## 2-3. 맞춤형 세무상담

###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

형식 절차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세무 애로사항 기재

Q. 법인 자금 여유가 없어 이번 부가세 5천만원을 납부 못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



세무서 전담직원

신속한 답변 제공

납부기한 연장  
신청방법 안내

### 접근경로

홈택스 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 ▶ 상담/제보 ▶ 미래성장 세정지원 국세상담서비스